

의안번호	2200050
의 퇴 인	이헌승의원
회 답 일	2024. 7. 1.
추계번호	24D036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4억 2,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9억 9,300만원(연평균 7억 9,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지원	1,429	623	635	647	659	3,993	799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0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함	의무규정

1) 제23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70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제71조(부담금 등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

4	안 제12조(실태조사)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3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제24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 및 인접한 시·도 지역 중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중에서 국제물류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제물류특구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의무규정
		-전담기구의 장은 원활한 국제물류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및 인접한 시·도지역 중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금융분야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시책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5조(글로벌 금융거점 조성 위한 시책수립 등)~ 제2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금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된 금융분야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시책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산광역시 관할 내의 일부 지역을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 -정부는 부산국제금융특구의 조성 및 지원, 그 밖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국제금융특구 내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정부는 부산광역시가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특구 내 관련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30조(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정부는 첨단산업등의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 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연구소의 설치·지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정부는 첨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36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부산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는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투자진흥지구의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37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제42조(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아교육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은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장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49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제53조(외국인환자 유치에 위한 지원)	-국가 및 부산광역시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국가 및 부산광역시시는 외국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촉진 및 국내에서의 정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국가 및 부산광역시시는 글로벌허브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내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상담,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등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54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제69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기업, 유통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은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장의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72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허브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등으로 조성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설치)	○	-
2	안 제8조(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	-
3	안 제10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	-
4	안 제12조(실태조사)	○	-
5	안 제13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 수립 등)~ 제24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국제물류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지 여부, 전담기구 및 국제물류특구 정보플랫폼의 운영규모, 국제물류특구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6	안 제25조(글로벌 금융거점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제29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금융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부산국제금융특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및 금융특구지원센터 설립 규모,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등을 추정 곤란
7	안 제3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한 조사·분석,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지정, 국제행사의 개최·유치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8	안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제 36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	부산광역시장이 부산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지역의 위치, 면적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부산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 해외 우수창업인력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9	안 제37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제42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유치원 운영경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비용 등에 대한 지원규모, 대학원대학 설립비용 등을 추정 곤란

10	안 제4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용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
11	안 제49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제53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	문화·관광시설 설치·이전, 외국 예술가의 국내 정착·활동,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2	안 제54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제69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실시될 지역·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 규모 등을 추정 곤란
13	안 제72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공유재산 처분채원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7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안 제7조제5항)가 설치되며,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안 제7조제6항)을 설치한다고 가정함

- 위원회의 위원은 총 25명이고, 이 중 15명이 위촉위원이라고 가정
- 위원회 산하에 2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각각 7명, 8명이라고 가정
-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분기별로 1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
-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실무추진단의 운영비용은 특별자치시·도지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실무지원단의 운영비용을 준용하여 추계함
 - －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실무지원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이 통합 운영 중이며, 1개 지원위원회에 대한 실무지원단 운영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비용을 준용함

□ 안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안 제10조에 따

른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안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유사 예산 사례를 준용함

- 제정안에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보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법률안이 시행되는 2025년에 실시한다고 가정
- 실태조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를 적용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각 연간 1,5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5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각각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국무총리 산하 실무추진단의 운영비는 2024년 예산에 반영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시·도별 평균비용을 준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5,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억원으로 추계됨
 - 2024년 예산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실무지원단을 통합운영하는 비용으로 2억 2,600만원의 운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4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별자치시·도별 평균 실무지원단 운영비용은 5,650만원임

- 실무추진단 운영비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따라서, 안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총리 산하 실무추진단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8,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지급	15	15	15	15	15	75
전문위원회 위촉위원 수당 지급	15	15	15	15	15	75
실무추진단 운영	58	59	60	61	62	300
합 계	88	89	90	91	92	4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안 제8조)

-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기존에 부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실무추진단 예산 금액을 준용함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15분도시기획단³⁾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운영비용으로 4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정안에 따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2,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1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3) 집 가까이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이웃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인 '15분 도시 부산'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으로, 2022년 8월에 전담조직이 신설되었음

[표 3]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안 제8조)	421	430	439	448	457	2,195

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안 제10조)

- 부산광역시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유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소요된 예산금액을 준용함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2040 트라이포트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⁴⁾ 비용으로 2024년 8억원을 편성하였음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5년에만 비용이 발생
- 제정안에 따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2025년 8억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안 제10조)	818	0	0	0	0	8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계의 전제에 따라 과거 부산광역시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편성한 예산 금액을 준용함
 - 부산광역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조성을

4)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또는 연계방안 등 특구제도 개선안 검토, 인프라 건설·운영 기술 연계 신산업 발전방안 등의 내용

위하여 국내 영어 교육 및 영어 소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 실시를 위하여 2023년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억 3,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실태조사의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2조)	102	104	106	108	110	5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4억 2,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39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88	89	90	91	92	450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운영	421	430	439	448	457	2,195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수립	818	0	0	0	0	818
실태조사의 실시	102	104	106	108	110	530
합 계	1,429	623	635	647	659	3,9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

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